



어린이집 CCTV 설치운영 목적은 무엇인가요?

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**안전**과 어린이집의 **보안**을 위해 설치·운영됩니다.

즉, 어린이집 내 **영유아와 보육교직원**의 권리와 **인권 보호, 안전사고 예방,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, 범죄예방** 등을 위해 설치·운영하는 것입니다.

(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제15조의4, 개인정보보호법)



! CCTV 열람 시 지켜주세요!

- 어린이집 CCTV 열람자는 **비밀 유지의 의무**가 있습니다.
- 영상자료를 열람한 후 알게 된 영상 속의 내용을 **제3자에게 누설**하거나 **부당한 목적으로 사용**하여서는 안 됩니다.

※ 어린이집 CCTV 열람과 관련한 기타 궁금한 내용은 **시·군·구 보육담당부서** 또는 **보건복지콜센터(☎129)**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보건복지부
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



“어린이집 CCTV”이렇게 운영됩니다!

CCTV는
아동을 안전하게 돌보겠다는
부모님과 선생님간의
“**믿음의 약속**”입니다.



보건복지부
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



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어요!

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.

(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)



부모님은 어떨 때 어린이집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나요?

- 자신의 자녀나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**학대 또는 안전 사고로 신체·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**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열람은 **다른 아동과 보육교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**,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**정해진 절차에 따라** 이루어져야 합니다.
- CCTV 열람 요청은 보육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**과다한 경우 열람이 제한될 수** 있습니다.
- CCTV 열람은 열람요청으로부터 **최장 17일 이내 열람이** 가능합니다.(열람요청 10일 이내 열람여부 통지, 회신일로부터 7일 이내 열람)



어린이집 CCTV 열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- 열람요청은 구두가 아닌 **서면**을 통해서 하는 것이 **원칙**이며, 의사소견서가 있거나 관계공무원 등이 동행하는 경우에는 열람신청서 작성 없이 즉시 열람도 가능합니다.

열람신청

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출

※ 작성해야 할 서류 ▶ 「CCTV영상물 열람 요청서」

※ 작성사항 ▶

청구인 및 정보주체 인적사항 / 영상기록기간, 설치장소, 영상열람 목적 및 사유
 * 「CCTV영상물 열람 요청서」는 어린이집에 요청하거나 **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(www.childcare.go.kr)**에서 다운로드 사용 가능합니다.

10일 이내

열람결정 통지

어린이집은 요청된 열람의 목적 및 보육의 제반사항을 고려한 후 결정사항을 서면을 통해 통보

※ 어린이집으로부터 받을 서류 ▶ 「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」

※ 확인사항 ▶

열람의 승인 또는 거부 여부 / 열람형태, 열람일시 및 장소 / 열람이 거부될 수도 있음

7일 이내

열람

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는 결정된 일시와 장소, 열람 형태에 따라 CCTV 영상을 열람

※ 열람을 위한 준비물 ▶

정당한 열람권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, 신분증 등

※ 확인사항 ▶

열람자는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서면 작성을 요청받을 수 있음
 * 열람 중 휴대폰 등을 이용한 무단촬영은 **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** 제한됩니다.



CCTV 열람요청이 거부될 수도 있나요?

- 아동의 안전 확인 등 열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- 영상자료 **보관기간(60일)**이 경과하여 **파기**한 경우 등
-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이 피해정도 및 사생활 침해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열람하지 않는 것이 영유아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**열람요청이 제한될 수** 있습니다.

